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제주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와
위탁유형별 양육환경 연구



濟州大學校 大學院

家庭管理學科

김 미 리

2007年 2月

제주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와 위탁유형별 양육환경 연구

指導教授 金 惠 淑

金 美 里

이 論文을 家政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12月

金美里의 家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6年 12月

- 목 차 -

국문초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5
2.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5

III. 이론적 배경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념	7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선정기준과 지원 내용	9
3. 국내의 가정위탁 보호사업	11
4. 외국의 가정위탁 보호사업	13

IV. 분석 및 논의

1. 제주지역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실태	
1) 위탁가정과 위탁아동의 규모	18
2) 위탁아동의 연령 및 성별 현황	20
3) 가정위탁 사유	20
4) 위탁부모교육 실시	21
5) 위탁아동에 대한 재정지원	23
2. 위탁부모들의 가정위탁 보호에 관한 사례분석	
1) 위탁가정의 양육환경적 특성	24

2) 장기위탁에 대한 위탁부모들의 태도.....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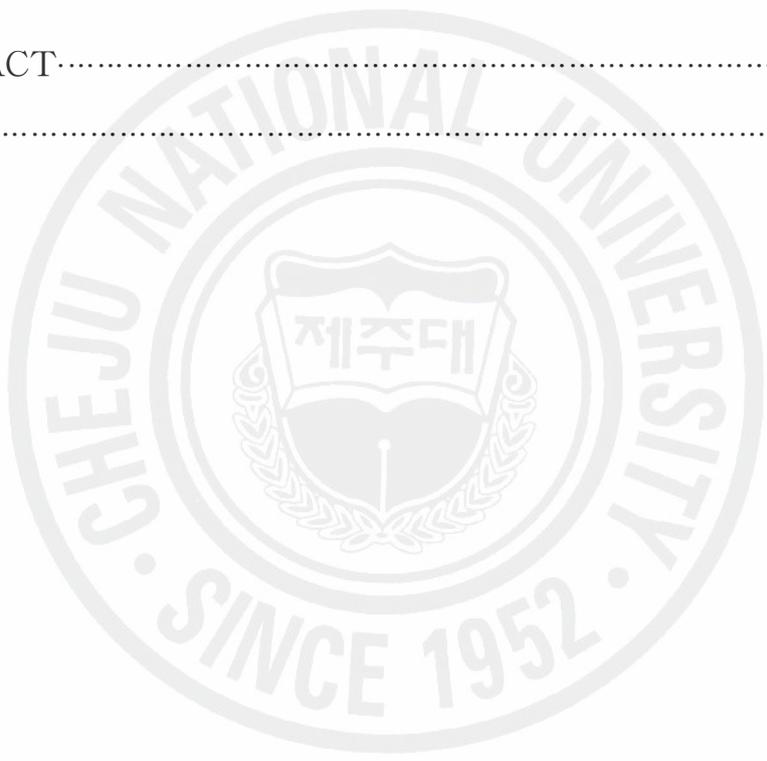
3) 가정위탁의 지속성 저해요인..... 42

V. 결론 및 제언..... 49

참고문헌..... 52

ABSTRACT.....54

부 록..... 57



- 표 목차 -

<표 1> 가정위탁보호아동.....	18
<표 2> 2006년 3/4분기 가정위탁 현황.....	19
<표 3> 위탁아동 연령 및 성별 현황.....	20
<표 4> 가정위탁 사유	21
<표 5> 연도별 요보호아동의 발생과 처리결과.....	21
<표 6> 위탁부모교육 대상, 시간, 내용.....	22
<표 7> 위탁부모양성교육 실시현황.....	22
<표 8> 위탁아동에 대한 재정지원.....	23
<표 9> 위탁부모의 연령	24
<표 10> 위탁부모의 건강상태.....	25
<표 11> 위탁부모의 종교.....	26
<표 12>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관계	27
<표 13> 위탁가정의 주거소유형태.....	27
<표 14> 위탁가정의 월수입.....	29
<표 15> 가정위탁보호제도를 알게 된 경로.....	30
<표 16> 위탁부모교육 수료현황.....	30
<표 17> 위탁아동의 연령.....	31
<표 18> 위탁아동의 위탁사유.....	32
<표 19> 위탁아동의 위탁경로.....	33

<국문초록>

제주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와 위탁유형별 양육환경 연구

김 미 리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지도교수 김 해 숙

우리나라의 요보호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는 6.25 동란을 겪으면서 전쟁고아를 보호해 오던 시설보호 형태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50여년 전에 시설보호가 아동들의 성장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조사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요보호아동들의 가정위탁보호가 보편화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위탁 보호사업이 최근 시행되고 있으나 그 역사가 짧은 만큼 그에 따른 연구도 가정위탁 보호사업과 위탁가정, 위탁아동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져 왔으나 위탁유형에 따른 양육환경에 대한 분석이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서의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위탁가정의 위탁상황을 분석하여 위탁유형별 양육환경을 모색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며,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에서의 가정위탁 보호 사업의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가정위탁유형별 양육·환경적 특성은 어떠한가?

셋째, 위탁가정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가?

조사연구는 2006년 2월부터 6월까지 제주지역에 거주하면서 가정위탁을 진행하고 있는 대리양육 가정 25세대, 친인척위탁가정 10세대, 일반위탁가정 10세대로 전체 45세대를 중심으로 면접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문헌연구와 실태조사가 함께 이루어졌다.

조사연구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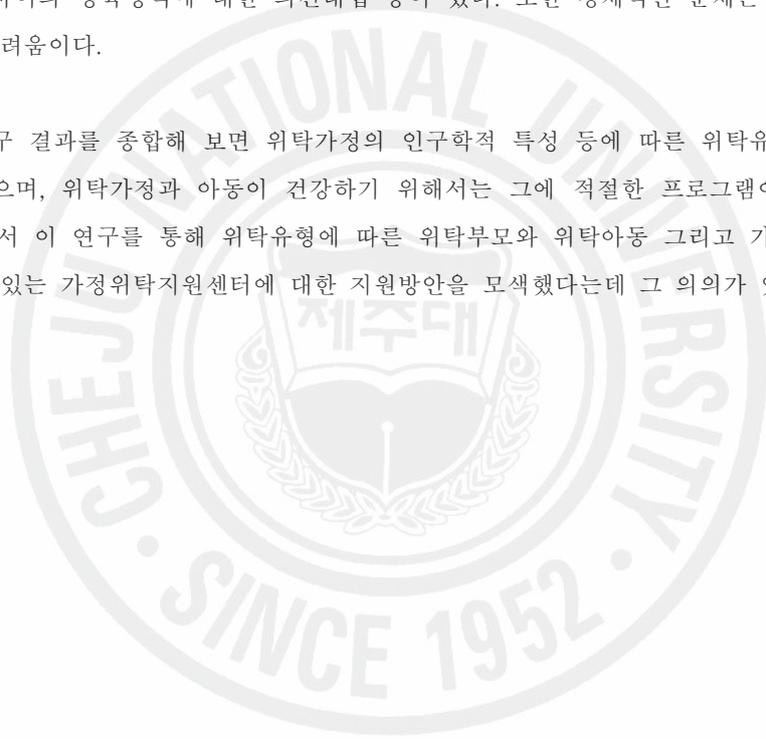
첫째, 제주지역에서의 가정위탁 보호사업은 2003년 33세대에서 2006년 168세대로 약 5배가량 증가하였으며, 위탁사유는 가정해체 및 경제적 빈곤에 의한 위탁이 대부분이다.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과 생계비, 공교육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아 대부분 위탁부모들이 아동양육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위탁유형별 양육 상황을 살펴보면 경제수준을 조사한 결과 일반위탁보다는 친인척위탁이 그 보다는 대리양육가정의 생활이 어렵다. 위탁사유는 친인척과 대리위탁 아동들은 가정의 해체, 일반위탁 아동들은 경제적 빈곤이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유형별 아동의 연령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일반위탁가정의 아동의 연령은 12세 이하가 많으며 대리위탁과 친인척위탁가정의 아동은 13세 이상이 대부분이다. 친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자발적으로 위탁을 시작한 일반위탁가정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원만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위탁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대리양육가정에서는 위탁아동들과의 감정대립, 친인척위탁가정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친정식구를 위탁하게 된다면 시댁과의 만남에서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일반위탁부모는 위탁아동의 친부 혹은 친모와의 갈등, 위탁아동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 위탁부와 위탁모사이의 양육방식에 대한 의견대립 등이 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는 위탁부모 모두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위탁가정의 인구학적 특성 등에 따른 위탁유형별 양육환경의 차이가 있었으며, 위탁가정과 아동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절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위탁유형에 따른 위탁부모와 위탁아동 그리고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본문 제 1부 6조)’에 따르면,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하며, 아동기 시절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 협약에서는 사회의 기초집단인 가족이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을 제공하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은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자랄 때 건전한 인격이 형성될 뿐 아니라 유능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은 아동에게 있어 어떤 환경보다 중요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족 안에서 행동 양식과 생활 습관 및 가치 기준을 습득하며 자신의 성격을 형성시켜 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요보호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는 6.25 동란을 겪으면서 전쟁고아를 보호해 오던 시설보호 형태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50여년 전에 시설보호가 아동들의 성장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조사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요보호아동들의 가정위탁보호가 보편화되어 왔다.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도 요보호아동이 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서 요보호아동들의 가정양육을 권하고 있다.

2004년 보건복지부는 요보호아동의 시설보호 의존형태에서 벗어나 입양 및 가정위탁을 통한 가정보호중심, 가족기능약화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보호중심,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안전과 권리보호라는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복지정책은 우리 사회의 가족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변화와 욕구들에 대처하는 정책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동시에 아동의 건전육성사

업의 일환으로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1차적으로 소년소녀가정세대들 중 조부모나 친인척에 의하여 양육되는 아동들을 가정위탁세대로 분류하여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정위탁보호는 소년소녀가정세대 발생 원인이 대부분 부모 사망과 가출로 조부모나 친인척에 의한 장기위탁보호가 되기 때문에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최종 목표는 아동의 자립과 독립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IMF 이후 요보호아동은 주로 부모의 빈곤이나 이혼, 미혼모, 아동학대 등 사회의 병리적인 문제가 가정해체를 가져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탁아동들에 대한 가정위탁보호의 목표는 단기보호를 통한 가족의 재결합이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가운데 부 또는 모가 생존해 있는 아동이 93.3%이고 이들 중 반수 이상이 2년 안에 보호자에게 되돌아가고 있다(고순이, 2004: 29). 이러한 아동을 일정기간 다른 가정에서 보호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의 가족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와준다면 가족해체를 줄일 수 있고 결국 사회적으로 발생될 문제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전국 17개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위탁부모를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조사를 통하여 선정된 위탁가정에 가정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위탁가정의 사정으로 인하여 아동이 배치된 위탁가정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가정으로 자주 이동하게 된다. 이럴 때 아동의 안전은 위협받게 되며, 결국은 기대와는 달리 시설병¹⁾ 못지않게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이 친가정에 복귀될 때까지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위탁가정과 위탁아동 더불어 친부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주지역에서의 가정위탁실태를 파악하고, 현재 활동 중인 위탁가정들을 대상으로 위탁상황을 분석하여 위탁유형별 양육환경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1)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시설보호대상자)의 정서가 시설의 특수한 구조적 환경으로 인하여 사회에서 낙인시 되고 있는 시설문화의 부정적 부분을 '시설병'이라고 한다. 시설병의 원인을 몇가지로 정리하면 시설의 대규모, 물품과 생활의 배제, 경제적 빈곤, 문화실조, 전문 사회사업서비스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목적은 두었다.



2. 연구문제

이 연구는 제주지역의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제주지역의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가정위탁유형별 양육환경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제주지역에서의 가정위탁 보호 사업의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가정위탁유형별 양육·환경적 특성은 어떠한가?

셋째, 위탁가정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들은 제주도내에서 현재 가정위탁을 진행하고 있는 위탁부모들이다.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에 따르면 2006년 9월 현재 제주도내 위탁가정과 위탁아동 수는 대리양육가정 107세대 169명, 친인척위탁가정 51세대 69명, 일반위탁가정 10세대 14명으로 총 168세대 225명이다. 면접조사는 대리양육과 친인척위탁가정 151세대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면접을 거절하거나, 노환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렵고, 새벽장사를 하는 등 시간을 맞출 수 없는 위탁가정을 제외하고 면접에 응한 35세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일반위탁가정은 면접을 거부한 1세대를 제외한 10세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자료수집과 문헌조사, 면접조사를 통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1) 사전조사

이 연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주관하는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현재 가정위탁진행 상황을 파악하였다.

위탁 유형별 양육환경 조사를 위해 위탁부모를 만나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탁가정을 파악한 후 2006년 1월 한 달 동안 직접 전화통화를 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면접을 요청하였다. 면접에 승낙한 위탁부모에게 인터뷰가 자연스러운 대화이며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것을 알렸다. 사전조사는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면접조사를 하는 중 질문에 누락되고 미비한 내용들을 수정·보완하여 질문내용을 작성하였다.

2) 본조사

본조사는 2006년 2월부터 2006년 6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제주지역 내 가정위

탁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로는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진행하는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실무자와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위탁유형별 양육환경 조사는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지원되는 기본 자료를 토대로 현재 위탁진행중인 위탁부모와의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접조사는 주로 오전시간과 퇴근 후의 저녁시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면접 장소는 위탁가정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사무실을 이용하는 등 기타의 장소에서도 면접이 이루어졌다. 면접에서 누락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전화를 사용하여 면접내용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소요시간은 사례별로 총 2시간에서 4시간이었으며, 최소 3회에서 최대15회 방문 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해 구성된 비구조화 된 질문지에 따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중에 연구자가 의문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였고 위탁부모가 스스로 말하도록 유도하여 연구자가 미처 질문에 포함시키지 못한 내용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자료분석

사전조사와 본조사 후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실태와 위탁유형별 양육환경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위탁유형별 양육환경은 면접조사 후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예비 범주를 만들고, 나누어진 예비범주에 따라 자료를 분리하였다.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하위범주를 재조정하여 같은 범주에 분류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석하였다.

Ⅲ. 이론적 배경

1. 가정위탁 보호의 개념

1) 가정위탁보호의 정의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정의는 미국의 아동복지연맹(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아동복지연맹은 가정위탁보호를 ‘아동복지기관의 승인을 받은 위탁가정에서 아동의 일시적 보호와 양육이 이루어지는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서비스’라고 하고 있다.

또한 사회사업사전(Encyclopedia of Social Work)에 의하면 위탁보호(foster care)는 ‘아동의 친부모 이외의 친척 또는 친척관계에 있지 않은 양육자가 아동의 가정 이외에서 아동을 24시간 돌보는 대리적 양육’으로 정의된다(Nancy Millichap Davies, 1994).

가정위탁은 한국의 역사에서 ‘수양제도’와 유사하다. 우리 전통사회에서 부모가 사망하여 보호자가 없는 아동은 친척이나 이웃이 ‘수양아들’ 혹은 ‘수양딸’로 삼아서 양육하고 혼인 후 독립시켰다. 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양육만 책임진다는 아동을 자녀로 호적에 입적시키고 영속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입양’과 다르다(이용교, 2005: 9-10).

백과사전에서는 수양제도란 민간의 풍습은 조선 정조대왕시에 ‘자휼전칙(字恤典則)’이란 법에서 요보호 아동의 보호방식으로 제도화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정조대왕은 흉년에 유랑 걸식하는 행걸아를 보고, 친히 윤음(임금님의 하명)을 내려서 행걸아를 보호할 수 있는 자휼전칙을 제정하게 하였다. 자휼전칙의 핵심적인 내용은 행걸아가 발생하면 관청(진휼청 등)은 먼저 보호자를 찾아주고, 보호자가 없을 때는 관청에서 일시보호를 하면서 민간에서 수양부모를 발굴하여 수용보호를 의뢰하며, 민간수양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관청에서 보호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장인협과 오정수(1997)는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아동 본래의 가정이 아닌 타 가정에 의해서 주어지는 보

호이다. 둘째, 계획된 기간의 설정이 필요한데, 이는 영구보호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사업기관에 의하여 마련되는 보호이다. 즉, 가정위탁보호는 아동에게나 그 부모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라고 인정하고 지속적인 책임을 지는 사회사업기관에 의하여 마련되는 보호이다.

결국 가정위탁보호는 아동보호의 극대화, 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 아동이 친부모와 재결합할 수 없을 때는 위탁아동이 조속한 시일 내에 위탁부모나 다른 가족에게 입양되도록 하거나 위탁아동 스스로 독립된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2) 가정위탁 보호의 의의와 필요성

가정위탁보호는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4). 1980년대 이후 제도적 정착화를 위한 시범사업들이 전개되었으며 1999년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2003년 4월부터 전국 16개 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가 개설되어 행정적, 예산적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요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진일보하였다. 이는 가정위탁 지원센터라는 민간기관의 전문위탁 운영체계를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행정기관의 전달체제하에서 요보호아동을 위한 제한적 위탁보호체제로부터 민·관의 협력적 아동보호의 형태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양심영, 2004: 57).

가정위탁사업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다는 부모의 이혼, 별거, 경제적인 파탄 등으로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나 부모로부터의 학대나 방임 때문에 단기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증가하면서 이들 아동을 위한 바람직한 보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가정위탁사업이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업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에 배치함으로써 아동에게 필요한 사랑과 욕구를 가장 잘 충족 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부모의 사망이나 재혼 등으로 장기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아동의 친인척들이 아동을 양육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시설

입소를 막고, 아동이 가족 내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21세기에는 과거와 같이 확대가족들이 서로 돕고 살던 시대와는 달라서 아동을 맡아서 돌보는 친인척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나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 없이는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우며,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허남순, 2004: 3).

2.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선정기준과 지원 내용

1) 가정위탁보호가 요구되는 아동

가정위탁보호의 대상 아동은 요보호아동이다.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그리고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06: 114). 그러나 아동학대인 경우 아동에게는 가정위탁이 필요하여도 양육권을 갖고 있는 친부모의 반대로 인해 위탁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보호 전환추진도 이루어지고 있다. 즉 소년소녀가정보호제도는 아동에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UN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또한 소년소녀가정에서 가정위탁보호로 전환 시 기존에 지원받았던 결연후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주영애, 2006: 30).

2) 가정위탁의 유형 및 선정기준

위탁가정은 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일정기간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보호·양육하는 가정을 말하며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의 관계에 따라 대리양육가정, 친인척가정위탁가정, 일반가정위탁으로 구분된다(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 2005: 4).

대리양육은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이고, 친인척가정위탁은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반가정위탁은

친족관계가 아닌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으로 구분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06: 114).

2006년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따르면 일반위탁가정의 객관적 선발조건은 위탁 부모의 건강상태, 경제상태, 연령, 교육정도, 취업 등이다. 주관적 선발조건은 위탁부모의 태도, 가정위탁 보호사업에 대한 이해도, 책임감 및 인격 등이 되고 있다. 위탁보호를 신청한 위탁가정의 동기는 매우 중요하다. 즉, 위탁부모의 과거 생활경험, 불우한 아동에 대한 동정심, 양육비를 통하여 가정수입에 관심이 있는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동을 길러 보려고 하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열성, 즉 자원 봉사적 동기인지 등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 위탁기관은 위탁보호를 신청한 위탁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그 가정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그 가정이 위탁가정으로서 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위탁가정을 선발하게 된다.

3) 경제적 지원

위탁가정에 지원되는 내용은 위탁아동 1인당 월 양육보조금 70천원이 지원되며, 위탁보호아동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위탁보호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 까지 지원한다((사)한국수양부모협회, 2004: 57).

또한 위탁보호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 기준에 따라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의 해당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지원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가정위탁아동의 후유장애, 입원·통원 의료비 등에 대해 상해보험료가 지급될 것이며, 이는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 제9조(아동의 건강 및 안전), 제10조(보호조치), 제31조(비용의 보조)에 지원근거를 둔다. 또한 대리양육·친인척 위탁가정에 전세자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일반주택(3~4천만원)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이 지원 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6: 116).

4) 정서적 후원

정서적 후원을 위하여 후견인 지정과 결연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대리양육가정과 친인척위탁가정 등 위탁보호아동의 경우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 위원이나 종교인, 지역의 여성지도자, 공무원, 가정위탁지

원센터 상담원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 사항을 상시 의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결연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 후원자와의 만남 행사 등 후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다(주영애, 2006: 31).

또한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특성에 따른 캠프, 나들이, 문화체험, 방문, 내방, 전화, 인터넷, 서신 등을 활용한 상담이 진행되면서 위탁아동이 건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정서적 후원이 이뤄지고 있다.

3. 국내의 가정위탁 보호사업

1988년 정부는 한국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인천과 광주에서 시범적으로 가정위탁 보호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사업이 축소되면서 결국 1995년에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3년 16개 광역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정부차원의 가정위탁 보호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7개소(경기도 2개소)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사실상의 가정위탁이 개인이나 종교단체에 의해 이미 실천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정위탁을 실천하는 개인이나 종교단체가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며 행해졌음을 볼 수 있다.

1854년경 프랑스 선교사인 매스트르(Maistre) 신부와 베르뇌(Berneu) 신부에 의해 실시된 『영해회사업』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최초의 가정위탁 보호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영해회사업은 한국의 고아를 가톨릭 신자가정에 위탁하여 양육하도록 하면서 프랑스 본국의 자선조직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1866년 병인대박 해 때 베르뇌 장주교가 순교한 후 중단되고 말았는데, 베르뇌 주교가 1859년 11월7일자로 布教 聖省에 보낸 보고서에 의하면 이 때 영해회사업 기금으로 기르던 고아의 수가 43명이라고 보고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가정에서 아동을 위탁양육 하다가 전문적인 가정위탁사업을 하는 조직으로 발전한 예도 있다. 1995년 10월 김명희에 의해 시작된 대안가정 『해 뜨는 집』이 근간이 되어 사단법인 대안가정운동본부로 발전했고, 1995년 12월 박영숙에

의해 시작되어 사단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로 발전한 경우가 그렇다. 또한 가정위탁전문기관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드러나지 않게 지속적으로 가정위탁을 실천하고 있는 개인들이 많이 있다(김명희, 2004: 36).

현재 국내의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입양기관에서 입양될 아동들, 특히 해외 입양되기 전의 신생아동들에게 제공해왔던 가정위탁보호와, 소년소녀가정으로서 경제능력이 없이 친인척과 동거해왔던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친척가정위탁보호로 분류된 것이 국내가정위탁보호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내에서 2001년에 부모와 헤어져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게 된 전체 12,086명의 아동들 중에서, 40.8%에 해당되는 4,938명만이 입양 및 가정위탁보호 등과 같은 가정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 외의 약 52%에 해당되는 6,274명의 아동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집단적인 보호를 받았으며, 약 7%에 해당되는 874명은 소년소녀가정세대로 지정되어 보호받게 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요보호아동의 보호 형태는 시설보호가 18,000명이고, 가정위탁이 8,000명, 국내 입양이 4천명이다. 1990년 발생한 요보호아동은 5,721명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는 10,222명으로 거의 배가 증가되었다. 이들의 발생 원인을 보면 10,222명 중 미혼모에 의한 아동이 4,457명과 빌곤, 실직, 학대 기타 등의 원인에 의한 아동이 4,463명으로 요보호아동의 대부분이 사회의 병리적인 문제로 발생되고 있다. 이들 중 시설입소가 4,824명, 가정위탁보호가 2,392명중 친척이나 대리양육이 위탁보호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족해체로 발생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시설입소나 대리부모 혹은 친인척 가정위탁보호로 이루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03).

한편, 보건복지부 2006년 가정위탁사업 지침에는 가정위탁대상아동, 위탁대상가정에 대한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선정절차 등을 명시해 놓고 있다. 이렇게 가정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이 규정되어 있으나 가정위탁사업의 수행기간과 경험이 짧은 관계로 실천의 현장에서는 가정위탁사업이 아동복지법 설치 근거의 부족과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지원의 부족, 행정기관의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행정협조의 부진, 그리고 친권문제와 위탁가정 보호 등 제도적으로 상당부분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 외국의 가정위탁 보호사업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와 문화적 배경이 유사한 일본과 대만의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미국의 가정위탁 보호제도

미국에서 가정위탁은 대규모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을 구제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19세기 초에 시작되었다. 보스턴 아동구호협회(Boston Children's Aid Society)의 책임자였던 찰스 버트웰(Charles Birtwell)은 1886년에 아동을 위탁가정에 위탁할 때는 아동의 욕구를 먼저 고려하고, 위탁가정의 환경조사, 사후관리, 아동과 부모의 재결합 등을 고려하여 아동을 위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연대적 의미의 가정위탁제도가 도입되었다(허남순, 1998: 160).

미국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과 같이 가정위탁보호제도도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각 주법에 의하여 지원과 감독을 받는다(허남순, 2000: 265).

1990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 위탁아동의 31%가 친척 등 연고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나(허남순, 2000: 266), 혈연을 중시하지 않는 미국의 경우에도 친인척에 의한 친인척 위탁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모선영, 2003: 19).

미국 보건성의 통계에 의하면 2000년도 3월말 시점으로 588,000명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에서 427,480명인 73%가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27%가 시설이나 그룹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미국의 아동보호 서비스가 위탁보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위탁보호가 아동보호서비스의 일차적 대안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양심영 외, 2001: 15).

가정위탁보호의 종류는 크게 친인척위탁과 일반가정위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가정위탁은 응급가정위탁(emergency care), 집단 가정위탁(family group care), 그리고 전문화된 위탁가정(specialized foster home care)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전문화된 위탁가정은 비행청소년, 정서 및 행동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치료적 위탁제공 및 AIDS에 걸린 아동이나 장기보호를 요하는 아동을 위탁 보호하는 가정, 친부모와 아동을 모두 위탁하여 보호하는 가정이다(허남순, 2000: 266).

미국의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위탁부모의 자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친척일지라도 위탁보호자로서 승인을 받기 위해 위탁부모자격심사와 가정방문을 받으며, 위탁 이후에도 철저한 지도감독과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받아 아동의 권리와 복지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모선영, 2003: 30).

2) 영국의 가정위탁보호제도

영국은 19세기 이후에 요보호아동을 빈민이나 부랑인 시설에서 분리하여 따로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가정위탁에 대한 최초의 법적 규제는 1872년 유아생명보호법(The Infant Life Protection Act)이, 현대적 의미의 가정위탁제도는 1984년 아동법(Childern Act)의 기초가 된 커티스위원회보고서의 영향이 크다. 커티스위원회의 보고서는 요보호아동을 위한 서비스로서 가정위탁보호가 시설보호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조건을 선호하였다.

1948년 아동법이 제정되면서 요보호아동은 정부의 책임으로 규정되었으며 보호방법으로 시설보호보다는 지역사회내의 가정위탁보호가 더 바람직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의 영향으로 아동들은 대규모시설에서 퇴소하여 위탁가정에 배치되었다. 영국의 경우 1950년대에는 요보호아동 중 약 35%가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었으나 1995년에는 약 65%(31,500명)로 증가하였다. 현재 영국 내에 위탁가정 수는 27,000명으로서 약 31,500명의 아동이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연령이 10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약 90%가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다(허남순, 2000: 268).

영국은 미국에 비하여 친부모가 필요에 따라 단기간 아동을 가정 위탁하는 것이 보다 보편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허용되는 분위기로서, 정부는 이를 부모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 위탁가정에 머무는 기간이 길수록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워 위탁된 아동을 단기간 내에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조속한 가정 복귀를 위

하여 아동과 일반가족과 사회복지사의 빈번한 접촉을 강조하고, 위탁가정이 위탁 아동들과 아동의 친부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문제해결에 대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위탁가정에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허남순, 2000: 269).

영국의 가정위탁 보호제도는 주로 지방정부의 보건당국 관할 하에 아동에 대한 위탁보호계획(care plan)을 수립하여 이에 기초하여 체계적인 위탁보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 영국에서는 친족 위탁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친족위탁의 효과성이 장점을 수용하여 활성화시키되 아동의 보호책임이 일차적으로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은 위탁가정의 처우와 권리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아동에게 사고가 났거나 친부모가 행방불명되었을 때 책임과 권한이 모호한 우리나라 법체계를 정비하고 가정위탁보호법 등 관련법률 제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모선영, 2003: 22).

3) 일본의 가정위탁보호제도

일본에서는 가정위탁제도를 이자(里仔)또는 이친제도(里親制度)라고 한다. 이친 제도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1974년부터는 친부모의 질병 등을 이유로 한 단기 이친제도도 만들어졌다(이은정, 2002: 216).

일본은 전후 길거리에 버려진 전쟁고아들을 더 이상 시설에서 수용할 수가 없게 되자 지역 내의 유지의 집에 의뢰하여 양육한 것이 가정위탁보호의 시작이었다. 1947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가정에서 혜택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시책의 하나로 제도화 되었다. 가정위탁보호의 구체적인 운영방침에 대해서는 1948년 「가정양육운영요강」이 만들어지면서부터이나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제정된 지 40년 만인 1987년 전면 개정되어, 새로운 「위탁부모 등 가정양육운영요강」이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한국복지재단, 2001: 44).

위탁아동의 수는 1955년 9,111명이었다가 2001년에는 2,211명이었으며 위탁부모로 등록한 숫자도 16,200명에서 7,372명으로 감소되었다. 위탁부모의 숫자가 점점 줄어 1948년에 가정위탁 보호제도가 시작된 이래 최저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류큐신, 2001.3.26 사설 재인용).

가정위탁 보호제도가 발전하지 않는 배경으로 혈연을 중시하는 문화, 행정이나

아동상담소의 소극적 자세, 행정이 위탁부모의 자원봉사 정신에 의지하여 충분한 수당이나 연수 지원 태만을 들고 있어 최근 가정위탁 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모선영, 2003: 23).

일본의 가정위탁 보호제도의 큰 특징으로 위탁부모연합회의 활동을 들 수 있다. 10월을 위탁부모의 달로 정하고 ‘위탁부모를 찾는 운동’을 후생노동성, 도도부현(都道府縣)이 주최하고 위탁부모연합에 위탁부모, 위탁자녀, 아동양호시설 등의 입소 아동과 아동 복지에 관심이 있는 주민과의 교류를 꾀하고 있다.

민간단체인 위탁부모연합회의 활발한 활동과 사고시 위탁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배상책임 보험제도 시행, 최근 아동학대 증가로 인한 전문 가정위탁 실시와 친족위탁 실시가 일본 정부의 주관심사이다. 문화적 배경이 유사하고 최근 아동학대 발생이 급증한 우리나라의 상황과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집중되어 지고 있는 이 시기에 일본의 경험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모선영, 2003: 24).

4) 대만의 가정위탁보호제도

대만에서는 경제적 성장과 가족계획의 성공적 추진에 따라 기아와 무연고 아동의 수가 점차 감소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증가, 가정과탄, 미혼모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장기적 또는 영구적 보호가 아닌 일시적, 단기적인 위탁보호 대상아동의 수가 증가되었고 이로 인해 대만이 1980년 초에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실시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이배근, 1994: 127).

1984년 대만정부에서 ‘아동위탁보호실시령’을 제정하여 가정위탁에 대한 법령을 만들고 대만 최대의 민간 아동복지기관인 CCF(Chinese Childrens’s Fund, 중화아동 복리기금)에 사업을 위탁하여 정부차원에서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김석산, 1999: 16).

CCF의 2000년 연보(Annual Report)에 의하면 11,340명의 아동이 가정위탁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신규 위탁아동 780명 중 68%인 529명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아동보호안배’ 조치가 가정위탁의 가장 큰 원인이다. 또한 위탁아동의 친부모, 직계존속 및 후견인 등에게 위탁비용에 대한 책임을 현·시 규칙, 조례를 통하여 강제하고 있다(양심영 외, 2001: 5).

대만은 학대받은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방법으로서 가정위탁 보호사업이 실시되었다. 사회복지기관이 아동학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가정위탁 보호제도를 정부에 건의하였고 그 결과 사회복지기관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민과 관의 협력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천과 광주지역에서 정부주도로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활성화하려다가 실패한 경험으로 볼 때 대만의 민과 관의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모선영, 2003: 25).

100년 이상의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영국 및 우리나라와 문화적인 배경이 유사한 일본과 대만의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내용을 고찰한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의 정책방향을 제시해보면 가정위탁보호서비스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은 위탁아동의 개별적인 욕구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친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가정으로의 복귀를 유도하고, 친척을 비롯한 위탁부모의 자격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교육을 통하여 위탁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위탁아동에 대한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민간기관과의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하여 가정위탁 보호사업이 효율과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 입법례를 고찰하여 가정위탁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위탁아동과 위탁부모, 친부모 및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가정위탁보호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모선영, 2003: 25-26).

IV. 분석 및 논의

1. 제주지역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실태

1) 위탁가정과 위탁아동의 규모

제주지역에서 부모의 사망이나 실직, 질병, 학대 등으로 다른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아동 수는 <표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난 2003년²⁾ 57명, 2004년 122명, 2005년 192명, 2006년도는 9월 현재만으로도 252명으로 3년 사이에 4배나 증가하였다. 또 이들을 맡아 키우는 가구는 2003년 33가구, 2004년 77가구, 2005년 125가구, 2006년 168가구로 3년 사이에 5배가량 증가하였다. 위탁유형별로는 가정위탁아동 가운데 조부모 등이 대리양육하는 아동이 169명으로 가장 많고, 친인척 위탁 68명, 일반가정 위탁 15명 등의 순이다. 이와 같은 증가는 일반위탁가정 보다는 대리양육가정수의 증가가 제주도내 전체위탁아동의 수에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낸다.

<표 1> 가정위탁보호아동

(단위 : 세대 / 명)

구 분	합 계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
2003. 12.	33/57	6/12	23/40	3/3
2004. 12.	77/122	33/60	37/53	7/9
2005. 12.	125/192	77/127	39/55	9/10
2006. 9.	168/252	107/169	50/68	11/15

1) 자료 :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2006, 9.

2) 일반위탁가정 : 일반위탁이 종결된 숫자는 포함하지 않음.

2)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일 : 2003. 4. 21 (보건복지부 승인, 제주도 지정)

<표 2> 2006년 3/4분기 전국가정위탁 현황

(단위 : 세대 / 명)

구 분	합 계	일반위탁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합계	9,899/14,064	916/1,170	6,140/9,037	2,843/3,857
서울	723/1,029	73/87	417/620	233/322
부산	736/980	61/77	421/578	254/325
대구	151/212	39/53	63/97	49/62
인천	563/771	53/64	331/46	179/240
광주	257/346	55/68	126/178	76/100
대전	143/217	22/31	83/132	38/54
울산	124/163	38/50	52/66	34/47
경기	1,156/1,668	78/96	704/1,057	374/515
경기북부	413/565	60/72	207/286	146/207
강원	1,256/1,794	89/124	882/1,279	285/391
충북	223/312	34/46	139/201	50/65
충남	420/611	44/56	254/385	122/170
전북	643/917	74/95	357/511	212/311
전남	991/1,475	37/53	764/1,158	190/264
경북	798/1,137	63/80	525/790	210/267
경남	1,134/1,615	86/104	708/1,063	340/448
제주	168/252	10/14	107/169	51/69

자료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06년 3/4분기 통계자료.

<표 2>에서처럼 지역별 위탁유형에 따른 위탁가정의 분포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대리양육가정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이며, 다음으로 강원, 경북, 제주이다. 친인척위탁가정은 경기북부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산, 전북, 경기 순서이다.

일반위탁가정은 울산과 대구가 월등하게 높으며, 제주는 전남과 더불어 일반위탁이 낮은 지역에 속한다. 가족주의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조부모나 친인척에 의한 위탁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위탁아동 연령 및 성별 현황

위탁아동들의 연령은 1~3세 1명, 4~7세 20명, 8~10세 40명, 11~13세 57명, 14~16세 78명, 17~19세 56명으로 중학생이 가장 많았다. 남아와 여아의 비율은 남아 127명과 여아 125명으로 성별로는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3> 위탁아동 연령 및 성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3세 (영아)	4-7세 (유아)	8-10세 (초등학생)	11-13세 (초등학생)	14-16세 (중학생)	17-19세 (고등학생)
계	252	1	20	40	57	78	56
남	127	1	12	15	32	35	32
여	125	-	8	25	25	43	24

자료 :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2006 .9.

3) 가정위탁 사유

위탁아동의 위탁사유는 <표 4>와 같다. 위탁아동들의 위탁사유는 부모의 가출·행방불명 128명, 부모사망 50명, 이혼 46명, 부모수감 12명, 부모실직빈곤과 학대방임, 미혼모(부)가 각 5명씩이며, 부모의 재혼 1명이다. 부모의 가출·행방불명, 이혼이 전체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부부갈등이나 가정불화로 인하여 위탁되는 비율이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위탁되는 비율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에서와 같이 최근 요보호아동의 발생경향을 살펴보면 부모의 사망, 기·미아로 인한 장기적인 보호보다는 빈곤, 실직, 부모의 가출, 미혼모아동, 부모이혼 등으로 인한 보호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국의 가정위탁사유와 마찬가지로 제주지역에서의 가정위탁사유도 가정해체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표 4> 가정위탁 사유

(단위 : 명)

계	부모 사망	부모가출/행방불명	부모 수감	이혼	부모실직 빈곤	학대 방임	미혼모 (부)	부모 재혼
252	50	128	12	46	5	5	5	1

자료 :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2006. 9.

<표 5> 연도별 요보호아동의 발생과 처리결과

(단위 : 명)

구분	연도	발생원인					처리결과				
		계	기아	미혼모 아 등	미아	가출 비행 부랑	빈곤 실직 학대 등	시설 보호	위탁 보호	입양	소년소녀가정
	2002	22,341	634	4,337	74	749	4,263	4,663	2,177	2,544	673
	2003	21,882	628	4,457	79	595	4,463	4,824	2,392	2,506	50
	2004	20,357	481	4,004	62	581	4,265	4,782	2,212	2,100	299
	2005	18,468	429	2,638	63	1,413	4,877	4,818	2,322	1,873	407

자료 : 보건복지부, 2005년, 통계자료.

4) 위탁부모교육 실시

위탁부모 역할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설정되면, 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위탁부모를 선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요구된다. 특히 예비위탁부모를 위한 사전교육의 경우, 예비위탁부모들 스스로 위탁부모역할에 대해 정확히 인식함으로서, 자신의 위탁동기와 위탁부모로서의 역량 및 위탁으로 인한 영향을 점검하고, 위탁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많은 예비위탁부모들은 어려운 아이를 돌보고 싶다는 선의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위탁아동이 가진 특별한 문제행동이나 위탁양육의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위탁양육을 결정할 경우, 위탁진행 중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

<표 6> 위탁부모교육 대상, 시간, 내용

	교육 대상	교육시간	교육 내용
위탁부모 양성교육	위탁을 희망하는 일반, 대리, 친인척	6시간	- 위탁양육에 대한 이해 - 위탁양육의 절차 - 위탁아동의 특성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 - 위탁부모의 역할 - 양육의 실제 (위탁사례, 질의응답)
위탁부모 보수교육	위탁부모양성교육을 이수한 위탁부모	8시간	- 실제 양육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화 교육 - 위탁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특성 이해

자료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06.

현재 우리나라의 위탁부모교육은 위탁보호를 희망하는 부모를 위한 위탁부모 양성교육 6시간과 위탁보수교육 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 내용은 <표 6>과 같다. 이와 같은 규정을 근거로 위탁기관들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7> 위탁부모양성교육 실시현황

(단위 : 회수(명))

구 분	계	대리양육가정 / 친인척	일반인
2004	7 (77)	3 (29 / 16)	4 (32)
2005	9 (53)	6 (21 / 6)	3 (15)
2006. 9.	5 (40)	2 (20 / 2)	3 (18)
계	21 (170)	11 (70 / 24)	10 (65)

자료 :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2006, 9.

제주지역에서의 위탁부모 양성교육에 대한 실시현황은 <표 7>과 같이 2004년에 7회 동안 7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그 중 일반인은 4회 교육을 통해 32명이 수료하였으며, 3회의 교육동안 대리양육부모 29명과 친인척위탁부모 16명이 수료하였다. 2005년에는 교육을 수료한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9회 교육동안 총 53명

이 이수하였다. 그 중 대리양육부모와 친인척위탁부모의 6회 교육결과 각각 21명과 6명이 수료하였고, 일반인은 3회 교육을 통해 15명이 수료하였다. 2006년도에는 9월까지 5회의 교육을 통해 40명이 이수하였다. 대리양육부모와 친인척위탁부모의 경우 2회 교육에 각 20명, 2명이 수료하였고, 일반인의 경우 3회의 교육을 통해 18명이 수료하였다. 교육을 이수한 예비위탁부모들 약20여명이 자조모임³⁾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반위탁으로 10명⁴⁾이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위탁부모 교육을 이수한 후 가정위탁을 대기하고는 있지만 실제 양육자로 연결되는 일은 30%에 그치고 있어, 대기자들이 양육자로 연결되기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5) 위탁아동에 대한 재정지원

위탁아동 전원에 대해 양육보조금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지원은 제공되고 있지만 그 외 친가정과 센터의 지원 및 정기후원금 지원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아니지만 문화체험 및 생일케이크 전달 등 위탁아동들에 대한 문화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으며, 정기 후원은 아닐지라도 일반위탁가정 초기양육금 지원이 2006년 7월, 10월 2개월 동안 3회 지급되었다.

<표 8> 위탁아동에 대한 재정지원

(단위 : 명)

양 육 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지원	아동친가정 지 원	센터자체 지 원	정 기 후원금
252	252	2	2	2

자료 :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2006.

3) 2004년 5월 25일부터 실시된 자조모임 「행복나눔미」는 일반위탁부모 및 예비위탁부모로 구성되어 현재 20여명의 회원들이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4) 자조모임회원도 포함됨.

2. 가정위탁 보호에 관한 사례분석

1) 위탁가정의 양육환경적 특성

제주지역에서 가정위탁보호를 하고 있는 대리양육가정 25세대, 친인척위탁가정 10세대, 일반위탁가정 10세대 총 45세대를 중심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가정위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위탁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위탁아동과의 관계, 건강상태와 물리적인 특성으로 주거형태, 월수입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위탁아동에 대해서는 성별, 위탁가정 1가구당 위탁아동의 수, 연령(학년)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1) 위탁부모의 특성

① 연령

<표 9> 위탁부모의 연령

(단위 : 명)

구분	30代	40代	50代	60代	70代	80代
대 리	-	-	2	17	5	1
친인척	5	-	5	-	-	-
일 반	4	1	3	2	-	-

대리양육부모 25명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연령은 50대 2명, 60대 17명, 70대 5명, 80대 1명이다. 친인척위탁부모의 연령은 30대 5명, 50대 5명이다. 일반위탁부모의 경우 30대는 4명, 40대는 1명, 50대는 3명, 60대 2명으로 연령대가 다양하다. 대리양육은 양육자가 조부모·외조부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탁부모들은 60세 이상이 많았으며, 친인척위탁의 양육자는 고모, 삼촌, 숙부 등으로 30대와 50대가 대부분이고, 일반위탁의 양육자들은 30대부터 60대⁵⁾까지 다양하

5) 60대 부모들은 50대 초반부터 위탁을 시작해 현재까지 한 아동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있다. (장기위탁 가정)

게 분포되어 있다.

② 건강상태

<표 10> 위탁부모의 건강상태

(단위 : 명)

구 분	좋 음	보 통	나쁨	장 애
대 리	1	12	12	-
친인척	5	3	-	2
일 반	4	5	-	1

위탁부모들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대리양육가정의 경우 자신이 건강하다고 응답한 위탁부모는 1명, 특별한 질병은 없지만 관절염 등이 있다 12명, 노인성 질환 외에도 다른 질병을 앓고 있다고 응답한 위탁부모가 12명이었다. 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위탁부모 중에는 중풍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생활이 힘든 경우도 있었다. 친인척위탁부모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응답한 위탁부모는 5명, 특별한 질병은 없지만 감기 등에 자주 걸린다고 응답한 위탁부모 3명, 공사장 사고 등으로 인해 장애판정을 받은 위탁부모가 2명 있었다. 반면, 일반위탁부모는 교통사고 후유증(심부전증)으로 인해 장애판정을 받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한 편이었다. 나이가 비교적 많은 대리양육부모의 건강상태가 가장 좋지 않았으며, 친인척위탁부모와 일반위탁부모의 경우는 장애가 없는 한 건강상태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종교

<표 11> 위탁부모의 종교

(단위 : 명)

구분	불교	기독교	천주교	안식일교	무
대리	11	6	4	1	3
친인척	7	-	1	-	2
일반	2	4	2	2	-

위탁부모의 종교는 대리양육가정의 경우 불교 11명, 기독교 6명, 천주교 4명, 안식일교 1명, 종교 없음 3명 나타났으며, 친인척위탁부모는 불교 7명, 천주교 1명, 종교 없음 2명으로 대부분 불교가 지배적이다. 일반위탁부모는 불교 2명, 기독교 4명, 천주교 2명, 종교 없음 2명으로 사례수가 적긴하나 기독교와 천주교를 합쳐 본다면 위탁부모들의 종교차이를 눈여겨 볼만하다. 그러나 대리양육가정과 친인척위탁가정에서는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종교가 동일하지 않았지만 일반위탁가정에서는 대리양육이나 친인척위탁가정과 달리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이 같은 종교를 갖고 있었다. 친부모와 위탁아동의 동의하에 위탁기간동안 위탁아동이 종교를 위탁부모와 같게 바꾸는 경우가 3가정이 있었다.

종교의 종류를 떠나 위탁부모들은 대부분 종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반위탁부모들 또한 모두 종교를 갖고 있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참여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④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관계

<표 12>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친가			외가		일반
	친조부모	고모	숙부	외조부모	외삼촌	
대리	19	-	-	6	-	-
친인척	-	5	3	-	2	-
일반	-	-	-	-	-	10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관계를 보면 대리양육가정은 위탁아동을 중심으로 조부모와 지내는 가정 18세대, 외조부모와 지내는 가정 6세대, 친부의 이모와 지내는 가정 1세대가 있다. 친인척위탁가정은 위탁아동을 중심으로 고모 5명, 숙부 3명, 외삼촌 2명으로 위탁아동 중 절반이 고모에게 위탁이 되었다. 일반위탁은 혈연관계가 아니지만 대리양육가정이나 친인척위탁가정은 친가로 위탁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전통적인 친가족의 부계혈연의식을 엿볼 수 있다. 즉 후손에 대한 책임의식이 친가에 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 주거형태

<표 13> 위탁가정의 주거소유형태

(단위 : 세대)

구분	자가	전세	월세	기 타
대 리	7	6	4	8
친인척	1	8	1	-
일 반	6	4	-	

위탁가정의 주거형태는 <표 14>와 같이 나타났다. 대리양육가정의 경우 자신 소유의 집을 갖고 있는 위탁가정은 7세대, 전세 6세대, 월세 1세대, 기타는 친지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로써 8세대이다. 대리양육가정은 주거소유형태가 자가이지만 집이 대부분 낡고, 어두워 생활환경이 극히 나쁜 가정 2세대이며,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후 이자와 원금을 달마다 갚아가고 있는 가정 1세대이다. 친인척의 경우 자가 1세대, 전세 8세대, 월세 1세대이다. 무료임대는 대부분 위탁아동의 이름으로 무료임대를 받아 지내고 있다.

일반위탁가정의 경우 일정 수준의 경제적 자립도가 있어야 위탁부모로서의 자격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대리양육가정이나 친인척위탁가정 보다는 생활수준이 높은 편이다. 일반위탁가정의 주거형태는 자가 6세대, 전세 4세대이다.

⑥ 직업

위탁부모들이 생계유지를 위해하고 있는 일을 살펴보면 대리양육가정은 무직 20명,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는 공공근로자 1명, 보험설계사 1명, 주방도우미 1명, 거주지 인근 마트에서 콩나물 물주기 1명, 폐지 및 빈병수집 1명이다. 이들은 연로하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직업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친인척위탁부모의 경우 위탁부는 개인택시 5명, 회사원 2명, 공무원 2명, 무직 1명이며, 위탁모의 경우 전업주부 7명, 사무직 1명, 주방장 보조 1명, 마트 물건 정리 1명이다. 일반위탁부모의 경우 위탁부는 개인 사업가 2명, 개인택시, 택배직원과 과수원운영, 교수, 회사원이 각1명씩 이고, 위탁모의 경우 전업주부 5명, 목사 1명, 회사원 1명, 자영업 2명, 어린이집 원장 1명이다. 하지만 자영업의 경우 매우 영세하여 큰 수입원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위탁유형별로 볼 때 일반위탁부모가 생계유지에 비교적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⑦ 월수입

대리양육가정은 양육자와 위탁아동을 합해 가족구성원이 1세대 당 2인~3인으로 월수입은 50만원이하 3세대, 50~100만원이하 21세대, 100~150만원이하 1세대였다. 친인척위탁가정은 1세대 당 4인~5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50~100만원이하 1세대, 100~150만원이하 3세대, 200~250만원이하 4세대, 무응답 2세대가 있었다.

일반위탁가정은 가족구성원이 1세대 당 2인~5인이며, 8인으로 구성된 사례도 1가정 있었다. 일반위탁가정의 월수입은 50~100만원이하 1세대, 100~150만원 2세대, 200~250만원이하 4세대, 250~300만원이하 1세대, 300만원이상 2세대가 있다. 위탁가정 유형별 위탁부모들의 직업 및 월평균소득에서 확인된 것처럼 일반위탁보다는 친인척위탁이 그보다는 대리양육가정의 생활이 더 경제적으로 빈곤함을 알 수 있다.

<표 14> 위탁가정의 월수입⁶⁾

(단위 : 만원 / 세대)

구분	0~50	50~100	100~150	150~200	200~250	250~300	300이상	무응답
대 리	3	21	1	-	-	-	-	-
친인척	-	1	3	-	4	-	-	2
일 반	-	1	2	-	4	1	2	-

이처럼 생활환경이 열악한 대리양육가정은 위탁아동에 대한 보호에 중점을 두며, 더불어 이들의 양육자에 대한 부양대책도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⑧ 위탁부모들이 가정위탁을 알게 된 사유

위탁부모가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를 알고 가정위탁보호를 하게 된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 <표 15>와 같다.

대리양육가정의 경우는 25세대 모두 동사무소를 통해서 가정위탁보호에 대하여 알게 되었으며, 친인척위탁가정은 동사무소를 통해 알게 된 경우 8세대, 친척을 통해 알게 된 경우 2세대이다. 일반위탁가정은 주위사람을 통해 2세대, 동사무소를 통해 2세대, 친척이나 친구를 통해 2세대, 신문이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알게 된 경우가 4세대였다. 이를 통해 일반위탁가정의 경우는 신문이나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가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발적으로 위탁의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절차나 방법을 모르고, 실행에 옮기지 못해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언론매체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열린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는 것 또한 일반위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6) 위탁가정에 지급되는 수급비용도 포함됨 (위탁양육비, 생계비 등)

<표 15> 가정위탁보호제도를 알게 된 경로

(단위 : 세대)

구 분	친척이나 친구	신문이나 대중매체	주위사람	동사무소	합계
대리양육	-	-	-	25	25
친인척위탁	2	-	-	8	10
일반위탁	2	4	2	2	10

⑨ 위탁부모의 교육수혜유무

가정위탁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마다 위탁부모에 대한 부모교육이 주어지는데, 위탁부모를 시작하기 전에 받는 위탁부모 양성교육과 추가로 진행되는 위탁부모 심화교육이 있다. 사례를 연구하면서 위탁부모 양성교육수료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한 결과 다음 <표 16>에서와 같이 친인척위탁부모, 대리양육부모, 일반위탁부모의 순으로 위탁부모 양성교육수료 비율이 높다. 위탁부모심화교육 역시 위탁부모양성교육과 같아 일반위탁부모가 위탁부모 양성교육이나 심화교육 모두에서 가장 높다. 따라서 보통 의무나 책임감으로 인해 가정위탁보호를 맡게 되는 대리·친인척에 비해 자발적 위탁을 하는 일반위탁에서 부모교육 참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6> 위탁부모교육 수료현황

(단위 : 명)

구 분		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위탁
위탁부모 양성교육	수료함	17	5	8
	수료 못함	8	5	2
위탁부모 심화교육	1회	3	2	2
	2회	-	-	2
	3회	-	-	1
	계	3	2	5

(2) 위탁아동의 특성

① 위탁 세대당 아동 수

한 위탁가정 내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의 수는 대리양육가정은 위탁아동 1명 13세대, 2명 11세대, 3명이상 1세대이다. 친인척위탁가정의 경우 위탁아동이 1명 8세대, 2명 2세대이다. 대리양육가정 중 1세대는 위탁아동이 2명이었으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1명은 시설보호를 시키고 1명만 양육하고 있었으며, 친인척위탁가정 또한 1세대가 4명의 위탁아동 중 2명은 시설보호를 시키고 2명만 양육하고 있었다. 일반위탁가정은 위탁아동이 1명은 6세대, 2명은 3세대, 3명은 1세대가 있다. 대리양육가정은 1명 또는 2명 보호가 보통이나 친인척과 일반위탁가정은 대부분 1명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연령

<표 17> 위탁아동의 연령

(단위 : 명)

구 분	계	1-3세 (영아)	4-7세 (유아)	8-10세 (초등학생)	11-13세 (초등학생)	14-16세 (중학생)	17-19세 (고등학생)
대 리	38	-	1	9	7	16	5
친인척	12	-	1	3	3	3	2
일 반	15	1	4	4	4	2	-
계	65	1	6	16	14	21	7

위탁유형별 위탁아동들의 연령과 학년을 통해 살펴보면 대리양육가정은 4세~7세 1명, 8세~10세 9명, 11세에서 13세 7명, 14세에서 16세 16명, 17세~19세 5명이다. 친인척위탁가정은 4세~7세 1명, 8세~10세 3명, 11세에서 13세 3명, 14세에서 16세 3명, 17세~19세 2명이다. 일반위탁가정은 3세 이하 1명, 4세~7세 5명, 8세~10세 4명, 11세~13세 4명, 14세에서 16세 2명이다. 따라서 일반위탁가정에 위탁된 아동들이 대리나 친인척위탁가정의 아동들보다 연령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위탁의뢰 아동의 연령이 대부분 낮은 영향일 수도 있으나 한국가

정법률상담소의 2006년 ‘가정위탁 실태와 위탁부모 욕구에 관한 기초조사’에 따른 연구결과 위탁부모들의 희망위탁아동 나이가 3~7세인 경우가 53.2%임을 고려할 때 일반위탁부모들은 미취학아동을 위탁하기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여러 연령층의 아동들이 위탁 될 수 있도록 위탁부모에 대한 인식개선 등이 필요하다.

③ 위탁아동의 위탁사유

대리양육가정 아동의 경우 <표 18>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위탁아동이 된 경우는 10세대, 부모의 행방불명 8세대, 미혼모 2세대, 부 혹은 모의 재혼 2세대, 부모사망 1세대, 부의 부양기피 1세대로 아동들의 위탁사유는 다양하였는데, 부모의 행방불명은 대부분 사업의 실패로 인한 부도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친인척위탁가정의 경우 <표 18>에서 볼 수 있듯이 모의 재혼으로 인한 경우 5세대, 부모의 행방불명 2세대, 부모사망, 부 수감, 부 질병에 따른 모의 간병으로 인한 위탁이 각1세대씩 있다. 이처럼 대리양육과 친인척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의 위탁사유는 부부갈등이나 가정해체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표 18> 위탁아동의 위탁사유

(단위 : 명)

계	부모 사망	부모가출/행방불명	부모 수감	이혼	부모실직 빈곤	미혼모 (부)	재가	기타
대리	1	8	-	10	-	2	2	1
친인척	1	2	1	-	-	-	5	1
일반	-	2	1	-	5	1	-	1

일반위탁가정은 부모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위탁이 2세대인데 이것은 아동들을 친부모가 센터의 연계 없이 주위 아는 사람(현재 위탁부모)에게 맡긴 후 연락을 단절한 경우이다. 부의 수감으로 인해 위탁된 경우 1세대, 부의 사망과 모의 재

혼으로 인해 조모와 지내다가 조모의 어려움으로 위탁된 경우 1세대이다. 부모이혼 후 모와 지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위탁된 경우, 부모이혼 후 부와 지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위탁된 경우가 각2세대씩 있으며, 부모가 있으나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위탁된 경우도 1세대, 미혼모 1세대 있다. 일반위탁아동의 위탁사유는 다양하면서도 근본적인 원인이 경제적인 빈곤임을 알 수 있다.

④ 위탁아동의 위탁경로

위탁아동의 위탁경로는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리양육가정 25세대 친인척위탁가정 10세대 모두가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위탁되었다. 일반위탁의 경우만 다르게 나타났는데 행정기관에 의한 경우가 1세대, 친모 혹은 친부로부터 위탁의뢰 된 경우가 각 4세대로서 친부모에 의해 위탁의뢰 된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표 19> 위탁아동의 위탁경로

(단위 : 세대)

	행정기관	친모	친부	기타	계
대리양육가정	25	-	-	-	25
친인척위탁	10	-	-	-	10
일반위탁	1	4	4	1	10

⑤ 위탁아동과 위탁부모 친자녀와의 관계

면접 결과, 친자녀가 모두 성장한 대리양육가정과 친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정을 제외한 위탁부모가 위탁아동과 친자녀가 서로 잘 지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위탁부모 중에는 친자녀와 위탁아동과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생각하는 위탁부모도 있었지만,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위탁아동과 친자녀와의 관계를 어려운 문제로 지적하는 위탁부모도 있었다.

a. 위탁아동과 위탁부모 친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한 경우

친자녀와 위탁아동의 상호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친자녀가 위탁아동을 돌

봐 주려고 노력하며, 위탁아동도 친자녀를 잘 따랐다. 그리고 친자녀들이 위탁아동들을 보살피며 타인을 돕는 일을 가정에서 직접 체험하게 되기도 한다.

- 친인척8 : 친자녀들은 지체장애가 있는 친척동생을 돌보거나 함께 산책을 하는 등 위탁아동을 돌봄.

우리 집에는 딸들만 둘 있어서 그런지 훈도(가명)가 오면서부터 분위기가 좋아 졌어요. 훈도는 장애가 있어서 혼자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목욕도 시키고, 주말이면 같이 바깥 놀이도 나가고, 저보다 더 잘해요.

- 일반7 : 친자녀와 나이가 비슷한 동생이 위탁되었지만 특별한 감정싸움 없이 동생을 잘 보살피는 등 오히려 양보심을 배우게 돼 위탁가정에 장점 이 됨.

우리 아이는 늦둥이에 외동아들이라서 자기밖에 모르는 아인데 동생이 생기니깐 변했어요. 많이 싸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양보도 하고, 자기 동생이라고 하면서 잘 놀아도 주고. 가끔 엄마인 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경쟁하지만 대체로 사이가 좋은 편이에요.

- 일반10 : 친자녀들과 위탁아동들 사이에 형제애가 생김.

저는 초등학교 1, 3학년 딸들과 초등학교 4, 5학년 위탁아동을 키우고 있어요. 위탁아동들은 우리 애들을 친 동생처럼 대해요. 우리 아이들도 언니처럼 잘 따르고 있고요. 나이가 또래여서 많이 다들 것으로 생각해 걱정했는데 오히려 서로 의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b. 위탁아동과 위탁부모 친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친자녀와 위탁아동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는 위탁아동 보다 친자녀의 수가 많은 경우 친자녀들이 힘을 모아 위탁아동을 따돌린다거나 친자녀와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경우 갑작스런 위탁아동의 등장과 함께 친자녀들이 자신들이 부모에게서 받던 사랑을 빼앗길까봐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친자녀와 위탁아동은 서로 성격이 맞지가 않아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었다.

- 친인척5 : 위탁아동에 대한 친자녀들의 따돌림.

임철(가명)이와 우리 아이들은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데도 서로 질투가 심해요. 그리고 둘이서 임철이를 가끔씩은 따돌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혼내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는데,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임철이가 견디기 힘들었는지 아직 9살인데 가출도 여러번 했었어요.

- 친인척9 : 위탁아동의 등장으로 인해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 하려는 친자녀.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수(가명)네 남매가 오면서 우리 애들이 어리광을 많이 부려요. 아마 자기들에게 주던 사랑을 지수네 남매가 뺏을까봐 겁이 났나 봐요. 서로 잘 지내면 좋을 텐데.

- 일반9 : 위탁아동의 과잉행동으로 친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지민(가명)이가 원래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런지 지민이가 온 후로는 우리 애들이 오빠들인데도 지민이를 이뻐하면서도 버거워 할 때가 있어요. 사이가 특별히 나쁜 건 아닌데 가끔씩 우리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2) 장기위탁에 대한 위탁부모들의 태도

(1) 장기위탁보호에 대한 견해

위탁아동들의 장기위탁이 초래되는 경우는 친부모의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발생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친부모의 행방불명이 가장 큰 이유가 된다. 간혹 일반위탁가정일 경우 위탁절차를 밟아 위탁시킨 경우가 아니라 이웃의 아이를 돌봐주다가 부모들이 행방불명이 되어버리는 경우 위탁부모들은 위탁아동을 장기위탁 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로 보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위탁아동은 친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위탁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 대안으로 아동을 위탁가정에 장기적으로 위탁보호하거나 새로운

위탁가정에 배치시키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위탁가정에 재배치시킬 경우는 위탁아동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유는 아동들이 또 다른 위탁가정에 새롭게 적응해야하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장기위탁보호에 관한 연구(Rowe, Hondleby & Garnett, 1989, Colette McAuley, 1996. 재인용)에 의하면, 일부 기관에서 장기 위탁보호가 전체 위탁배치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라고 주장될 수 있지만 “아동 개개인에게는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대안으로서 영구계획(permanency planning)이라는 개념의 영구가정(permanent homes)⁷⁾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정위탁 보호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기 때문에 영구가정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서구의 정책 도입은 아직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사례조사 대상자들은 친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위탁아동에 대한 장기위탁 보호에 대해 대부분이 장기위탁 보호를 고려하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입양도 가능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친가정이 완전회복이 되지 않았을 지라도 연락이 지속되고 있을 경우 위탁아동이 언젠가는 친가정으로 돌아가 적응해야하기 때문에 위탁가정에 장기적으로 배치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신중하게 반응하는 위탁부모도 있었다.

① 장기위탁 가능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가정위탁 보호는 18세까지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위탁부모들도 장기위탁이 될 경우에는 자신의 가정에서 계속 보호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다른 위탁가정으로 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위탁 보호 대상이 되는 위탁아동들은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법적인 보장이 전제되어야 하며, 친부모와의 관계도 고려되어진 상태에서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이처럼 장기위탁에 대한 의견 차이는 위탁아동의 발생유형과 맞물릴 수 있다.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가정의 경우 위탁부모 대부분이 위탁에 대한 준비가 되거나 그들이 원해서 위탁을 시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위탁아동의 친가정 형태

7) Jannah Hum Mather & Patricia B. Lager, 2000.

가 급작스럽게 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위탁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대리양육부모와 친인척위탁부모의 경우 대부분 아동들이 성장할 때까지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위탁가정은 장기위탁에 대해서 원하는 부모들이 10가정 중 4가정으로 장기위탁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었다. 위탁아동의 장기위탁을 원하는 가정은 가족구성원이 모두 합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친부모가 동의할 경우 성장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 까지 함께하길 원했다.

- 대리17 : 아이들이 마음 놓고 있을 곳이 없어 계속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
내가 저것들 친할미도 아닌데, 저애들은 왜 나하고만 살고 싶어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잘난 아빠 만나 엄마가 세 번 바뀌고 나더니 이제는 아빠랑 사는 것이 싫다면서 나하고만 살겠다고 저러니 내가 귀찮다고 내 쫓을 수도 없잖아요. 지금 갈아서는 말도 안 듣고 생활도 어려워서 보내버리고 싶지만 어린 것들이 마음 붙일 곳이 없는데 어쩌겠어요. 내가 거두는 수밖에 별 방법이 없잖아요.
- 대리24 : 딸이 다하지 못한 일(손녀양육)을 자신이 이어간다고 생각함.
내 팔자나, 내 딸 팔자나, 손녀 딸 팔자나 다 똑 같아요. 처음부터 내가 저것을(손녀) 키우려고 했던 것도 아이예요. 딸이 이혼하면서 자기 자식은 자기 손으로 키우겠다고 고집부리며 데려와서는 고생하며 돈 벌다가 지는 죽어 가 버렸죠. 이제 내가 저걸 키워야 하는데, 시집갈 때 까지는 내가 키워야지 어쩌겠어요. 딸이 다 못한 일들 이제는 내가 이어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 일반4 : 위탁아동의 미래를 생각하여 이곳저곳 옮겨 다니기보다는 안정적으로 한 곳에서 자랄 수 있도록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위탁하기를 원함.
3년을 위탁하기로 할머니하고 약속을 했지만 지금 한진(가명)이나 할머니를 보면 위탁이 종결된 후 돌아간다면 한진이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 같은 생각

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할머니하고 이야기를 했죠. 올해로 계약기간이 끝나서 곧 돌아가야 하겠지만 한진이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을 생각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키우려고 합니다. 아이가 잘되는걸 봐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면 위탁한 보람이 없잖아요.

- 일반8 : 친부가 동의하면 위탁아동이 새로운 가정을 꾸릴때 까지 위탁하길 원함.

만약에 친부가 아이를 안데려 간다면, 우리 가족들은 계속해서 우리집에서 키울 마음이 있어요. 모두 보민(가명)이가 아빠에게 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얼마 전에 보민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면서 연락이 왔을 때 솔직히 이건 아닌데 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놓였어요. 저희 가족들은 보민이가 시집갈 때 까지 함께 지내고 싶어 해요. 보민이와 보이 아빠가 원하기만 한다면 말이죠.

- 일반10 : 위탁아동들에게 혼란을 적게 주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는 장기위탁을 생각하는 경우.

일단 친가정에 복귀가 되어야 하는데, 참 떨어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친부모님이 계시고 언젠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계속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낼 수는 없는 일이고요. 위탁기간이 만료 되어서 집으로 갔는데, 만약 친가정 형편이 좋아지지 않아 다시 위탁하게 될 경우 다른 위탁가정으로 보내지 말고, 꼭 우리 집에서 다시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어요. 아이들은 생활환경이 자주 바뀌다보면 불안하게 되잖아요.

② 장기위탁 불가능

대리양육가정은 연로하여 양육자들이 아동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장기위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도 한다. 일반위탁의 경우 위탁을 진행하면서 처음 시작 할 때와는 마음이 달라지면서 위탁을 빠른시일 안에 종결하기를 원하기도 한다. 친부모에게 돌아갈 형편이 되지 못해 위탁을 몇 개월 연장하더라도 장기연장은 바라지 않는 것이다. 일반위탁은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탁

과정 중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감이 없으므로 위탁단절을 쉽게 원하게 된다.

- 대리5 : 위탁아동의 과격한 행동과 비행으로 계속 돌보기 힘들어하는 경우.
내 핏줄이라서 내가 계속 돌봐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 힘들어. 지 애비를 똑 닮았어. 함부로 말하는 거나, 집에 붙어있기 싫어하는 거나. 지금도 저렇게 할아버지도 때리고 할머니 머리도 잡는데 더 크면 우리집 들어 먹을 아이야. 난 지 동생이 보고 배울까봐 겁이나. 내가 밖에 작은 방이라도 얻어줄 테니 나가라고 하면 싫다고 하던 것이 지금은 친구 집에 얹혀살면서 용돈 타러 가끔 들어온다니깐. 난 애비나 애미가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젠 감당 못하겠어.

- 일반7 : 위탁아동에 대한 위탁모의 마음이 변한 경우.
우리집 아이와 형수(가명)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형수가 보통이 아니라서 아이들은 좋아하지만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처음 마음에는 좋은 일 하는 셈치고 키우려고 했는데 날이 갈수록 쉽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예전 내 마음하고 지금하고는 같지가 않아요. 친엄마가 많이 아프다니 1년 계약에서 몇 개월 연장은 가능하겠지만 빨리 엄마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2) 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보람

위탁아동을 양육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위탁부모들이 느끼는 보람은 여러 가지가 있다. 위탁경험을 통해 느끼는 보람이 위탁부모로 하여금 위탁을 지속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며, 위탁부모들이 갖는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① 가정위탁이 위탁부모와 위탁가정에 도움이 된 경우

위탁아동으로 인해 집안에 웃음이 돌고, 예전보다 가족 간에 상호작용이 더 잘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위탁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인격적 성숙이 미흡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등 위탁경험이 가족생활에 긍정적 활력소를 제공한다.

- 일반1 : 위탁아동으로 인해 살아가는데 많은 힘이 되고 도움이 됨.
은지(가명)가 없었더라면 나도 여기 없을 것인데... 핏덩이 때 내개 맡겨져서 지금까지 약 7년을 키우고 있는데 은지는 나밖에 몰라요. 나도 친척이고 뭐고 하나도 없는 터라 많이 외로웠을 텐데 은지가 옆에 있으니 살고 싶은 마음도 더 생기고, 사는 것이 재미도 나고, 내가 은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지가 나에게 살아가는데 힘을 주고 있어요.

- 일반8 : 위탁아동으로 인해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음.
보민(가명)이가 우리집에 오면서 우리 집에 웃음이 피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남편이나 나나 서로 같은 집에서 지내고 있지만 같이 앉아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본 기억이 까마득한데, 보민이가 우리 집에 오면 남편도 웃음이 많아 졌을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집안에서 모여 텔레비전을 보거나, 쇼핑을 함께 가는 등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보민이가 우리 집 복덩이죠. 그리고 보민이가 있어서 제가 제 건강에 더 신경을 쓰기도하고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이려고 노력도 하고 있어요. 보민이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가 있어서 가면 보민이가 창피하지 않게 해줘야죠. 날 보고 엄마라고 부르는데, 젊고 예쁘게 하고 가야 우리 보민이 공주님 기가 살지 않겠어요.

② 위탁아동에 대한 기쁨

위탁아동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며, 예전에 갖지 못했던 기쁨을 맛보게 된다. 친자녀가 성장한 위탁가정에서 나이 어린 아동을 위탁한 경우 위탁아동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더욱 친밀해질 수도 있다.

- 친인척3 : 위탁아동은 위탁가정 안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늦둥이 역할을 차지함.

우리 아이들은 모두 컸고, 미진(가명)이는 어릴 때 우리집에 왔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미진이 어릴 때 유치원 다니면서 배운 노래나 율동을 집에 와서 보여주면 그것을 보는 저하고 남편은 마냥 기쁘고 즐겁죠. 미진은 우리보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데 남편이 너무 좋아해요. 늦게 얻은 딸 같다면서..

- 일반3 : 위탁아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는 것을 지켜볼 때는 새로운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됨.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다고 하는 말을 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위탁 초기에는 많이 싸우고, 울고, 남편에게 나랑 위탁아동 모두 혼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얼마 전 위탁아동 중 막내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 보살피다가 제가 몸살로 심하게 앓은 적이 있어요. 침대에 누워서 꿈작도 못하고 있었는데, 혜진(가명)이가 밑반찬이랑 국이랑 데워 밥상을 차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모 “식사하세요. 그래서 빨리 일어나세요.”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지만 혜진이 마음이 너무 고맙고 이뻐서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던지. 위탁초기 혜진이는 절대 그럴리 없었어요. 그런데 약 9개월이 지난 지금 이런 혜진이의 마음을 보면서 이젠 마음을 나누는 한 식구가 되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③ 친자녀에게 산 교육이 됨

일반위탁가정의 친자녀들인 경우 특별한 봉사활동이 없이도 부모와 함께 집안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나누는 삶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갖게 된 계기가 될 수 있었다. 또한 위탁가정의 친자녀들은 위탁아동과 한 집에서 살게 되면서 자신의 환경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어떤 교육 보다 값진 교육이 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위탁부모들 역시 평소 봉사하는 경험을 가졌었고, 그로인해 위탁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던 경우도 있다.

- 일반7 : 위탁아동을 통해 친자녀가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을 익히게 됨.

요즘 애들이 이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다니는 우리 아들은 가끔 위탁아동이 없을 때 “엄마! 형수(가명) 진짜 엄마는 어디 있어? 형수는 엄마 보고 싶겠다.” 그러면서 위탁아동이 자기를 때리고 그래도 자기 생각에 지나치다 싶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요. 어리지만 형수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참아주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잘 표현은 못하지만 위탁을 통해서 보살핌, 배려, 사랑

을 베풀 줄 알아가겠죠.

- 일반7 : 친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본받아 성장한 후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남을 돕는 일을 하는 등 영향을 받게 됨.

우리 애들 중 하나는 결혼하고, 나머지는 유학중에 있어요. 모두 육지에 살고 있어서 제주도에서는 저랑 아버지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예전에 내가 대학교수를 그만두기 까지 계속 문제청소년들을 상담하고 함께 지내면서 바로 잡아주는 일을 참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위탁아동을 키우고 있는데 떨어져 살고 있지만 우리 애들이 “엄마는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아요?” 하고 물어봐요. 그런데 자기들이 사회복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해 오던 일들이나 가정위탁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졌나 봐요.

3) 가정위탁의 지속성 저해요인

(1) 위탁부모와 친부모와의 갈등

친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는 대리위탁과 친인척위탁의 경우보다 일반위탁과정에서 많이 나타난다. 위탁에 있어서 서로 협력자, 조력자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위탁부모와 친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로 위탁을 지속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일반7 : 친부모의 무관심으로 인해 위탁부모가 느끼는 섭섭함이 위탁아동의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형수(가명)의 친모가 나이가 어려서 그러겠거니 하고 싶지만 이건 너무해요. 형수를 맡기고 1달쯤 지나서 나에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어린이집을 통해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지 않는가. 전화를 하면 시큰둥하게 답을 하고... 이런식으로 1년을 견뎠는데, 위탁을 연장하게 된다면 나에게 전화 한 통화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형수를 보면 안타까워서 잘해주다가도 심하게 울고 고집부리면 친엄마 생각이 나서 아이가 미워질 때가있어요. 연락도 잘 없거니와 내가 전화를 하는 것도 눈치를 보면서 해야 하니. 시집살이를 사는 것도

아니고..

- 일반5 : 전화상으로 친모와 위탁모 사이에 생긴 오해로 인해 갈등이 깊어진 경우.

처음에는 친모랑 나이가 비슷해서 친구하며 지내면 편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 말이라는 것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친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잘 지냈는데 아이들일로 통화하면서 말 한번 잘못된 것이 이렇게 사이를 멀게 할 줄은 몰랐는데. 사람이 여유가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펴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내가 낮이면 잠시 바깥일을 보러 다녀오는 시간에 아이들이랑 몰래 통화를 하는가 봐요. 또 가끔씩 때문에 빵 봉지가 걸려 있는데, 처음에는 잘못 배달온줄 알았어요. 그런데 애들 친모가 두고 갔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상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애들에게 조금이라도 소홀하거나 화풀이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하시는 건지. 이번에 위탁이 종결된다면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아이들보다 친모마하고 관계가 어려워서 안할래요. 차라리 자원봉사만 하던지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아 봐야할 것 같아요.

(2) 위탁부모와 위탁아동과의 갈등

종결을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대리양육과 친인척위탁가정의 경우는 위탁아동과의 갈등을 그대로 안고 위탁을 진행시킬 수밖에 없으며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행동으로 힘들어한다. 뿐만 아니라 위탁아동의 학습과 습관 등 위탁부모가 겪는 여러 가지의 갈등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일반위탁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대리3 : 손자의 늦은 귀가와 계속 주의를 주지만 변하지 않는 모습에서 위탁에 대한 갈등을 겪게 됨.

나는 손자 녀석에게 바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착실하게 공부 열심히 하는 것뿐인데, 녀석은 왜 그걸 몰라주는지, 솔직히 나도 혼자 몸이면 이렇게 복잡스럽게 살지는 않을 텐데. 내가 죽자고 바다에 같이 간 적도 있어요. 그때는

잘하겠다고 울면서 매달리더니 그때 뿐 다음날이 되면 또 똑 같은 생활이 반복되고, 그러다보니 나도 저도 이젠 많이 힘들지..

- 대리10 : 사춘기 위탁아동의 부적응행동으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됨.

큰아이는 괜찮은데 동생이 남자아이라 그런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이 말도 잘 듣던데 지금은 말을 안들어. 삼촌이 가서 이야기하면 듣는척 하다가도 다음날이면 또 잊고 공부도 안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기만 하고, 그래도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대화를 해봐야 알지. 아빠가 사람구실 못하고 살면 아들은 잘살아야 할텐데. 자기가 잘해야 내가 키우는데 힘도 되는데...

- 대리20 : 조모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계속 병원을 다니고, 약을 복용하며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손녀들과의 갈등 등 손녀들이 클수록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위탁아동과의 부정적인 관계로 인해 위탁에 대한 갈등을 갖게 됨.

지금도 중학교2,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들만 셋인데, 우리 집 때문에 동네가 조용할 날이 없어요. 아이들이랑 전쟁하느라고 하루가 멀다 않고 큰소리가 나죠. 여자아이들인데 집안 살림 하나 도우지 않고, 내가 몸이 성하면 괜찮은데 허리가 아파서 물리치료 받고 혈압 약 먹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몸인데도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으니.. 더군다나 큰 녀석은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을 그대로 짊어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움직일 생각을 안 하니, 내가 그걸 보면서 살겠냐 말이죠. 둘째도 큰애 닮아가고 막내도 닮아가고 이젠 힘에 겨워서 아이들과 싸우며 지내는 것도 힘들어요.

- 일반4 : 변하지 않는 아이들의 행동으로 인해 힘들어 하는 경우.

애들이 우리 집에 와서 3개월은 아침마다 구구단 외우고 학교 가느라고 전쟁이었죠. 처음 집에 왔을 때 달래고 혼내면서 시간이 흐르니 집에서는 변화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이 얼마나 말썹을 피웠던지 새로 전학한 학교에서 담임선생님들이 저를 한번 만나자고 해서 학교로 찾아 갔는데 혜진(가

명)이가 수업시간이면 아이들을 선동해서 옥상으로 화장실로 숨어 다닌다는 거예요.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요. 뭘가에 공을 들이면 약간의 보상이라도 있어야 힘이 나는데...

(3) 위탁가정 내의 문제

대리양육가정에서는 위탁아동들의 부적응 행동과 사춘기 등으로 가정 내에서 자주 빚어지는 양육자와 아동과의 갈등이 위탁가정의 지속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리위탁가정은 양육자와 아동간의 세대차이가 많이 나며, 양육자의 노환 등으로 살날이 많이 남지 않은 경우도 위탁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친인척위탁가정일 경우에는 친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나타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친가의 가족 중 누군가를 돌보게 되면 배우자 가족의 눈치를 보게 되는데 이 또한 위탁양육에 큰 스트레스의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반위탁가정일 경우 위탁아동의 양육방법에 따른 위탁부와 위탁모의 의견 차이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 대리18 : 양육자의 노환 혹은 건강악화로 인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대리18의 경우 조모가 중풍으로 쓰러졌으며, 나이가 많아 위탁아동이 성장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양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간 종결 혹은 위탁양육자가 친인척으로 변환될 가능성이 있다.

- 친인척4 / 5 : 여성의 경우 시댁과의 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올케언니는 못살겠다고 도망가 버리고 오빠는 수감중이어서 어쩔 수 없이 조카를 맡아 키우게 됐는데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명절날 시댁에 찾아가면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시부모님들은 그냥 키우라고 하시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남편도 임철(가명)이를 많이 아끼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남편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눈치가 보여요. 제사 때도 데리고 가면 아주버님이 무릎에 앉혀서 밥도

먹이고 하는데... 고맙기는 한데 제 맘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 일반5 : 위탁아동 양육방법의 차이로 인해 위탁가정 내에 분열이 생기게 된 경우.

위탁을 하며 가장 힘든 것은 남편이랑 자주 다투게 되는 거죠. 우리집 아빠는 아이들에게 한계를 느낀다며 위탁종결의사를 자주 밝혀요. 무엇보다 아이들 때문에 우리 부부사이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마찰이 심하게 나서 결혼생활 하면서 이번 아이들 때문에 다툰 일이 가장 큰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4) 경제적 부담

2003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가족 총 소득대비 1인당 평균 자녀양육비는 월 75만 4천원으로 이 중 교육비가 30만 4천원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의 가정위탁 양육비 20~30만원으로는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는 적은 액수임을 알 수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시한 위탁부모 욕구에 관한 기초조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6; 94.)에 따르면 위탁부모들은 현재 위탁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는 월 기초수급비가 41~50만원정도로 책정되길 원하는 위탁부모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대리양육과 친인척위탁가정의 경우 친부모들이 이혼이나 사업부도로 인한 행방불명으로 집안경제상태가 불안한 상태에서 위탁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끼니정도는 해결되더라도 그 외의 양육에 있어 예상하지 않던 수술로 인한 병원비나 사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은 대리양육과 친인척위탁가정뿐만 아니라 일반위탁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위탁부모의 복지 욕구에 관한 나승혜(2001)의 연구에서는 의료적 문제가 있는 위탁아동의 경우,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욕구, 교육적 문제가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 욕구 등이 높았다. 위탁부모들이 느끼는 심리적 어려움으로는 아동의 미래에 대한 불안, 아동에 대한 책임감이 높게 나타나서 위탁부모에 대한 지원 체계가 미비한 점⁸⁾이 위탁

부모의 심리적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①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 대리23 : 손녀가 다니고 싶어 하는 학원도 못 보내줘서 미안해함.

자기 엄마하고 아빠랑 살때는 사업도 잘될 때였고, 애들 엄마가 큰딸만큼은 제주도 최고의 여자로 만들겠다면서 어릴적부터 집에서 피아노 레슨도 시키고 그랬는데, 사업에 실패한 후로는 다니고 싶어 하는 일본어 학원도 못 보내고 중학교 3학년인데 입시학원도 못 보내게 가장 미안하지..

- 대리12 : 남의 도움은 받지 않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집을 얻고 손자를 키우려니 의지와는 상관없이 도움을 받게 됐고, 예전에 다니던 학원에 가고 싶다는 말을 가끔씩 던지는 손자를 보면 마음이 더 아파온다고 함.

그래도 정수(가명)부모가 부도내고 도망가기 전에는 살만 했는데 부도로 집도 날리고 이제는 집 얻는데 돈 들이고 아이 키우는데 돈 들이고, 늙어서 내가 돈에 이렇게 어려움 겪을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남의 도움도 안 받으려고 했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더라고. 정수는 태권도 학원 다니는 걸 무척 좋아했었는데 이제 학원은 우리 형편에 사치죠. 가끔씩 학원가고 싶다고 말 한마디하고 돌아서면 얼마나 역장이 무너지는지 할미로써 아이 앞에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 친인척2 : 조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살려주고 싶은데 형편이 여유가 없어 학원을 못 보내주는 것이 가장 미안하다고 함.

혜진(가명)이는 딸 같은 조카라서 멀게 생각한 적은 한번도 없는데 마음에 걸리는 건 아이 재능을 못살려주는 것이 미안하죠. 글을 참 잘 쓰는데 그런 비슷한 웅변학원에 보내고 싶은데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아들이랑 혜진이랑 자

8) 미국의 경우에도 '위탁부모에게 주어지는 경제적인 배상이 위탁아동을 돌보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위스콘신주 기관들을 조사한 결과 50%만이 위탁부모에게 비용을 전부 변제하고 있었다(cited in Pasztor & Wynne,1995). ... 일반적으로 위탁부모는 자신 개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별도의 옷, 오락 활동, 장난감, 개인적인 미용용품, 그리고 학교비용을 지불 한다...' 이것은 '위탁부모가 자신의 시간과 개인비용을 투자함으로써 아동복지체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Pasztor & Wynne,1995) 'The Nature of Foster Family Care' 번역자 미상, 재인용

기들이 원하는 학원에 다 보내려면 생활이 되겠어요. 나중에 원망은 안 듣게 될 런지 최선은 다하고 있는데 어렵네요.

② 의료비에 대한 부담

- 대리15 : 아이가 많이 아팠지만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경험과 수급자라 해서인지 진료를 할 때도 성의 없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검사정도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음.

얼마 전에 우리 작은 아이가 자꾸 배가 아프다고 해서 소아과를 갔는데 3일 치 약만 주기에 참고 있다가 너무 아파해서 응급실로 갔지, 그런데 응급실에서 약만 주고 가라고 해서 집에 왔다가.. 마지막에는 우리 아기가 너무 아파해서 응급실로 다시 갔는데 X-레이를 찍어야한다고 7만원을 내라는 거야. 그래서 당장 있는 몇 천원 내고 나중에 드리겠다고 했더니 그럼 그냥 아이를 데리고 가라니 어쩔 수 없이 돈 빌리고 X-레이를 찍었는데 맹장이 너무 심해서 복막염이 됐다는 거라. 급하게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무도 몰라.

- 일반7 : 위탁아동이 장이 약해서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야하지만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라 위탁양육에 부담이 된다고 함.

형수(가명)는 먹는 거나 입히는 데는 큰돈이 필요하지 않지만 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큰돈이 들고 약도 따로 육지에서 불러 먹여야하는데 의료보험이 하나도 안 되는 거라 보조되는 돈이 많이 모자라지... 우리 아들에게 해주는 거랑 같이 해주면 되기는 하는데 특별히 드는 돈이 많은지라 가끔씩은 싫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의 요약

이 연구는 제주지역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가정위탁보호를 실시하고 있는 대리양육 25가정과 친인척위탁 10가정 및 일반위탁 10가정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와 면접조사를 하여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지역에서의 가정위탁 보호사업은 2003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위탁아동의 규모는 2003년 57명, 2006년 252명으로 3년 사이 4배나 늘었다. 위탁가정의 증가는 대리양육가정의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아동들이 가정위탁된 사유는 부모의 가출·행방불명, 이혼이 전체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부모의 부재에 의한 위탁이 대부분이다. 위탁아동에 대한 재정지원은 양육보조금과 생계비만이 지원되고 있어 위탁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탁가정의 유형에 따른 위탁아동들의 양육환경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리양육가정은 대부분 친조부모가 아동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다. 대리양육가정의 위탁사유는 아동의 친부모가 이혼 혹은 가출 및 행방불명 등 가족해체며, 이들 가정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위탁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다하지 못한 일을 감당하거나, 인생에서의 업보로 생각하며 의무감으로 손자와 손녀들을 키우고 있다. 위탁부모는 나이가 많고 위탁아동은 대부분 사춘기인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위탁부모와 위탁아동 간에 갈등이 심하여 아동이 가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친인척위탁가정의 양육자를 볼 때 아이들의 외가친 보다는 고모, 숙부 등이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출가한 고모가 양육의 책임을 질 경우는 배우자는 물론 시집식구들의 눈치까지 보게 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부계혈연의식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친인척위탁가정의 위탁사유는 아동의 친부모가 이혼 후 재혼을 하는 등 가족해체가 대부분이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대리양육가정 보다 환경이 나은 편이며, 위탁부모와 아동 사이에 갈등은 심하지 않지만 친자녀와 위탁아동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하지만 친자녀가

모두 성장한 경우 어린 위탁아동으로 위탁가정이 활력을 얻기도 한다.

일반위탁가정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에게 위탁 연결되는 것이며, 일반위탁 가정에서 아동의 위탁사유는 친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다. 위탁아동의 나이는 일반위탁부모들이 어린아동을 선호하여 유아가 많다. 가정위탁을 하려면 일반위탁 부모가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하는데 이는 충분한 경제력이 있어야하고, 결혼한 부부에게만 위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위탁아동을 위탁할 만한 가정이 충분하지 않아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위탁은 아동의 친부모하고의 갈등과 위탁부모 간의 양육방식차이로 인한 갈등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위탁부모들은 위탁동기 자체가 순수한 열린 공동체 의식을 갖고 위탁을 시작하였으므로 장기위탁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2. 가정위탁의 활성화에 대한 제언

제주지역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위탁가정 유형별 양육환경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위탁양육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대리양육가정 등 위탁가정에서 겪고 있는 위탁부모와 위탁아동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가정위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위탁가정에 대한 가족상담과 치료, 가족캠프 등 양육자와 위탁아동이 함께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탁아동의 나이나 신체적, 정서적 발육상황에 따른 현실적인 위탁양육비가 탄력적으로 지원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리양육가정의 경우 위탁아동들의 친부모의 부재 등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친인척·일반위탁가정의 경우도 위탁아동의 사교육비, 학교 수업에서 과생되는 각종 비용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을 모두 위탁가정에서 감당하기에는 현재 지급되는 양육비와 기초수급비로는 너무 벅차다.

둘째, 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위탁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아동의 정신진료 및 놀이치료 등을 활용하는 치료적 형태의 위탁보호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위탁아동들이 원가족 해체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도와줌으로써 이차적인 가족해체를 방지할 수 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대리양육이나 친인척위탁가정에 배치된 위탁아동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대부분 고령인 조부모와 살고 있는 위탁아동들에게 대학생 등의 고급인력 혹은 종교단체와 멘토(mentor) 관계를 형성하여 학업, 진로 등에 방향제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 위탁아동의 친부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탁아동들의 친부모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반위탁 되었던 아동들이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 친부모에게 돌아갔을 경우 위탁서비스의 개입 전보다 친가정의 가족기능이 회복 될 수 있도록 취업알선 혹은 위탁아동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부모교육, 제공이 필요하다.

넷째, 가정위탁 보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대 국민 홍보방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수의 국민에게 가정위탁 보호 사업에 대해 알림으로써 위탁아동에 대한 의식개선을 통해 일반가정위탁으로의 참여를 높여 나가야 한다.

이상에서 제주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와 위탁유형별 양육환경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면접이 위탁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의 친자녀에 대한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는 위탁모의 의견에 따라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아쉬움이 남았다. 그리고 위탁아동의 환경에 대해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제한점을 가졌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장차 가정위탁보호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위탁부모의 위탁아동 양육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나 위탁아동의 발달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강수진(2000). 친인척보호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은정(200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 및 지속성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 사회복지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순이(2004). 위탁보호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사업의 서비스 접근 방안. 가정위탁 지원센터 개소 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자료집, 29-47.
- 고환순(2004).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희(2004).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제 : 대안가정운동본부 활동을 중심으로. 춤 가정 통권 1호, 36-47.
- 김정우(2006). 일반위탁부모의 위탁유지 의사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제24권 1호.
- 김정자(2004). 아동보호사업의 효율적 실천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영(2002). 가정위탁모의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인식 및 만족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곤(2005).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미(2005). 대리양육가정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부모역할책임에 대한 인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2005). 제13차 위탁부모양성교육 자료집.
- 모선영(2004).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경기도내 친족 위탁가정을 중심으로. 숙명여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숙(2003). 외국의 가정위탁의 제도 및 제안. 한국 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CEP], 가정위탁사업의 현황과 과제, 19-40.
- 배광호(2005).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울산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04). 2004년 아동복지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05). 2005년 아동복지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06). 2006년 아동복지사업안내. 2006년 통계자료.
- 이기정(1999).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와 개발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배근(1994). 가정위탁보호 사업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호**, 한국아동복지학회.
- 이송이(1999). 가정위탁보호 양육 환경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2004).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청주대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숙(2005). 위탁가정의 가족기능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2006). **츨가정 통권 3호**. 2006년 내부자료.
- 정혜선(2006). 위탁부모의 역할과 위탁부모 교육. 가정위탁연구소식지, **통권 제2호**, 4-13.
- 주영애(2006). 가정위탁보호제도에 관한 일 고찰.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지**, 제9권 1호, 27-36.
- 최송옥(2003). 가정위탁보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가정위탁보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정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6). 가정위탁 실태와 위탁부모 욕구에 관한 기초조사. **가정위탁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 47-113.
- 허남순(2004).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가정위탁지원센터 개소 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자료집**, 3-25.
- 허남순(2005).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과 제도의 문제점. **가정위탁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 7-32.

Abstract

A study for the situations about foster care system in the Jeju region and the raising environment according to each fostering patterns.

Kim, mi-ri

Major in Home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Che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Kim, Hye-sook, Ph. D

Korea's social welfare service for protection of the child has been continued going through the Korean War as a form of institutional care for the war orphans. However, in developed countries, foster care for the protection of the children has been generalized because of the results of the studies announced 50 years ago that the institutional care is not the appropriate circumstances in raising the children.

Foster care system is carried out these days even now in Korea. There are some studies researched about foster care system and foster homes, but there are no analyses about fostering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pattern of the foster homes because it has a short history.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grasp the situation of foster care in the Jeju region, analyze their conditions and investigate into each pattern of raising circumstances.

This study's details are as follows :

First, what is the situation like of foster care system in the Jeju region?

Secon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stering surroundings for each foster care patterns?

Third, what are the obstacles which impede the continuance of foster home?

I used the method of interview in order to research 45 households including 25 substitute families which carry out foster care in the Jeju region, 10 kinship cares and 10 general foster homes. Also literature research and research on actual situations are carried out.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foster care system in the Jeju region has increased about 5 times than before from 33 households in 2003 to 168 households in 2006 and the reason of the fostering is mostly because of family dissolution and financial poverty. The fostered children's subsidy, the living cost and the expense of the public education are given to the foster parents but most of them still suffer from financial difficulties.

Second, when looking at the raising situation according to each fostering patterns, kinship care is more difficult than general foster care, and substitute family is more difficult than the kinship care as a part of a financial standard. The reasons of fostering are family dissolution as for kinship and substitute cared for children, financial poverty for general foster cared children. Also the children's age is different for each patterns. General foster home's children are mostly under 12 and most of kinship care's children are over 13. The relationship between foster care home's birth children and protection of the children is more amicable when the foster care was started with their birth children's understanding.

Third, the main causes of obstructing the continuance of fostering are emotional conflict with the protection of the child in the substitute family, and uncomfortable situation with the husband's family when the women foster children from her side of the family. Also general foster parents have some causes that conflict with the children's birth parents, unchanged appearance of the fostered children and a conflict of opinion between the foster mother and father. Financial difficulty is every foster parents' problem as well.

After putting various results together, there was a difference of raising circumstances for each patterns according to the foster hom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appropriate program for each patterns should be given in order to make foster homes and fostered children healthy. Therefore, there is significance in meaning that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supporting solution about foster care support center which is carried out under the foster care system, and foster parents and fostered children for each foster patterns.



<부 록>

가정위탁보호 양육 환경에 관한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에 재학중인 김미리입니다. 저는 ‘제주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와 위탁유형별 양육환경 연구’를 하고자 몇 가지 질문들을 드리니 다음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탁부모님과 아동에 관한 신상은 비밀보장하며, 질문에 관련된 내용들도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6년

A. 위탁부모님의 양육 환경적 특성에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이름	세대주			
연령	세대주			
위탁아동과의 관계				
종교				
건강상태				
직업	위탁부		위탁모	
월수입				
주거현황				
교육수혜유무				

B. 위탁아동의 양육 환경적 특성에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이름	
연령	
성별	

위탁된 시기	
위탁기간	
위탁경로	
위탁사유	
친부모 행방	
친부모와의 접촉관계	
건강상태	
친자녀와의 관계	

C. 위탁부모님이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를 알게 된 경로와 위탁동기에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1.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를 알게 된 경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 1)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2)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를 알게 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 3) 위탁부모를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2. 위탁부모가 된 동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 1) 위탁부모가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2) 위탁부모가 되기로 결심하셨을 때 누구와 가장 먼저 상의 하셨으며, 어떤 분들과 상의 하셨습니까?
- 3) 위탁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없었는지, 있다면 어떤 분들이 반대하셨으며 가장 많이 반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3. 위탁부모로서 양육상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현재까지 몇 명의 아동을 양육하셨습니다?
 - 2) 가장 오래 양육한 아동은 얼마간이었습니까?
 - 3) 가장 단기간 양육한 아동은 얼마간이었습니까?
 - 4) 현재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위탁기간은 얼마입니까?
 - 5) 장기위탁보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지속성저해요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위탁아동 친부모와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 2) 위탁아동과의 갈등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3) 그런 갈등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 4) 위탁을 하면서 가정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습니까?
 - 5) 위탁을 진행하시면서 경제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 현재 제공 되어지는 양육비에 만족하십니까?
 - 양육비의 부족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혹은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6)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지원되는 서비스에는 만족하십니까?